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8월 25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정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대시민 신뢰도 향상과 청렴한 지방의회 구축의 기초가 되고 있음.
-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(선거의회자치법규과-229, 2025.12.8., 시행), 의원 임기 만료 1년 내 공무국외활동 허가 제도 도입,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모절차 도입 및 직원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.
- 아울러,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('26.4.), 서울특별시의회 등 16개 광역의회 및 6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임.
- 이 중 2026년도 청렴노력도 영역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('26.9. 기한), 이들 권고 사항을 도입하여 시민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공식행사 초청 및 국제회의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며, 그 밖에 일반 목적 공무국외활동의 경우 의장이 허가 검토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(안 제5조의2제2항 부터 제5항 신설).
- 나.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외부추천 및 공모를 통하도록 하며, 심사위원 중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공무국외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·부당한 활동으로 판단된 경우 의장이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또는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(안 제12조제5항 신설).
- 라.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,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동행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6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필요성, 긴급성, 활동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조치한 경우, 대상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.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,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

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심사위원을”을 “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”으로, “거쳐 다양하게 구성·위촉해야”를 “거쳐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활동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활동 종료 후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 활동을 위법·부당한 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공무국외활동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공무국외활동 제한 등)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제5조의2(공무국외활동 제한 등) ① ----- -----. <u><후단 삭제></u>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	<u><삭제></u>
4. 5. (생략)	3. 4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<u><신설></u>	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의 경우에는 활동필요성, 긴급성, 활동결과 활용가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

1. (생 략)

2. 지방의회 운영 또는 국외교육 연수 전문가 : 20명

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

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의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조치한 경우, 대상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,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

<삭 제>

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
: 4명

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교육계 ·
법조계 · 언론계 · 시민사회단체
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
모 절차를 거쳐 다양하게 구성 ·
위촉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
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
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민간위원
중에서 호선한다.

④ ~ ⑥ (생 략)
<신 설>

⑦ (생 략)

제12조(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)

① ~ ④ (생 략)
<신 설>

② -----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
을 위촉하는 때에는 -----

---- 거쳐야 -----
----- . 이 경우 의장은 심사
위원회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
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
한다.

③ -----

--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
이 지명한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
활동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
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,
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· 의결
에서 회피해야 한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12조(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공무국
외활동 종료 후 제출한 활동보고

<신 설>

제16조 (생 략)

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 활동을 위법·부당한 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원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②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침부름, 회식 강요 등 공무국외활동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7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